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20가단281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0. 5. 20.

판결 선고 2020. 6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6,725,673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정운

별지